

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(제37조의21제1항 관련)

1. 예찰조사기관은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1명 이상 및 예찰 전문요원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및 예찰 전문요원(이하 이 표에서 "예찰 전문인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되, 다목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- 가. 농학, 농생물학, 생물학, 미생물학, 분자생물학, 생명공학, 균학, 세균학, 바이러스학, 임학, 원예학,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이상의 학력 및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나.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·지도·조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(정부기관, 연구소, 대학교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
 - 다.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·지도·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라. 식물병해충 분류, 진단, 분석 등을 주제로 한 졸업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
2. 예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병행하여 육안 판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예찰조사기관 지정 전에 예찰 전문인력에 대한 해당 연도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.
3.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조사능력의 측정·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.